

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안내

2013년 6월 4일

①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내용은?

법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 법 목적 및 정의규정 보완	취급기준 개인보호구 착용, 유해화학물질 진압 보관량 제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강화 및 구체화	안전진단 안전상 우려가 우려되는 경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급시설 안전진단 시행
허가제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장외영업면허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시설장사질서서 제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허가	도급관리 도급신고 의무 부여, 수급인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지 선인, 일정 수준의 능력과 기준을 갖춘 수급인에게만 도급가능	책임강화 2.5% 5% 영업장지 처벌에 곁들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에 대비 5% 이하, 단일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2.5% 이하 과징금 부과
위해관리계획 5 일정량 이상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공정 안전, 응급조치, 비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해관리계획" 마련(다수 수립)	사고신고 화학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미신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현장수습조정관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상시 감독 및 대응을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에 대한 안내(인포그래픽)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2013-295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2013년 6월 4일 /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 운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예방하였음

나. 성능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1) 성능검사항목은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따라 주행온도분포확인 및 배출가스 검사로 명확히 하였음
- 2) 주행온도 분포검사는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부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7일 이상의 운행자료가 보관(공회전 자료 제외)되도록 하였음

다. 성능검사결과판정 및 결과제출

-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의 파손 및 자료손실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음
- 2) 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할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재검사 및 검사기간 연장

- 1) 재검사는 2회에 한하여 신청하고, 재검사 신청 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음
- 2)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기간 연장을 위해서 만료일 이전에 30일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할기관은 이를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도록 하였음

마. 검사수수료 등

- 1)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과 오류를 최소화 하였음

바. 검사기관 운영 등

- 1) 검사기관은 자동차 소유자 거주지역과 성능확인검사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종합검사대행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환경부 공고 제2013-321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3년 6월 10일 /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현재 환경표지 사용료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환경표지 제도 확산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 사용료 체계 세분화(안 제2호)

현행 제품 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매출 구간(3개)을 신설하여 사용료 책정비율 형평성 조정

나. 영세·중소기업 연간 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안 제2호 비고 2호)

기업의 총매출액 적용구간을 세분화(2단계→4단계)하여 최대 90%까지 감면 비율 확대

다. 사회 공헌활동 일환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 기증하는 기업에 사용료 반환(안 제2호 비고 7호 신설)

연 1회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기 납부한 사용료 반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